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76
----------	------

제출년월일 : 2022년 1월 2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해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한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2.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해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각각 면제함(안 제4조의2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11. 18.~12. 8.)결과: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p><u>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u></p>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감면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제출함.

4. 작성자

재무국 세제과 나은산(02-2133-3357)